

폐기물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 보관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②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폐석면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 ③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금지사항) 교내에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실험실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
- ②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③ 폐기물관리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

제5조(폐기물 수집 및 보관) 폐기물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 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 책임자는 폐기물별 보관용기에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용기가 쓰러져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실험실에서 폐기물을 폐기물보관소로 반출 시에는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폐기물처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④ 실험실에서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처리담당자는 보관용기에서 폐기물 유출 및 밀폐상태 등을 확인하여 한다.
- ⑤ 폐기물처리담당자는 실험실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종류별, 성분별로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실 책임자는 폐기물을 보관기간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물운반업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폐기물 유출 및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폐기물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 및 보존 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마. 소각재
 -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사. 폐축매
 -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자.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페레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이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
-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